

대통령령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2항제2호 중 “18세 미만의 자녀”를 “자녀”로 한다.

제82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제2항에도 불구하고,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받은 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9조(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) ① (생략)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<u>18세 미만의 자녀</u> 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)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 ③ (생략) 제82조(입학전형방법) ① ~ ⑧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9조(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자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제82조(입학전형방법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<u>⑨제2항에도 불구하고,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받은 학교는 교육감의</u>

	<u>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 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</u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688